

특별 법제동향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

I 요약

□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데, 2023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1% 초과분이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근로시간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유효기간은 2022.12.31.까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을 고려해 국회에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다.

□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2023.8.1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제공, 일부 비공개 승인 등의 대상이 연간 제조·수입량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으로 확대된다(2023.1.16.). 산재보험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손상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2023.1.12.)되고,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가 (2023.7.1.) 시행될 예정이다.

* 건강손상자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 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사망도 포함)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12.81%로 인상된다.

□ 노사협의회 (22.12.11. 시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었고,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규정이 삭제됐다(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고용 관련 제도 (22년 12월 시행법령 포함)

동포 외국인력인 H-2 비자 체류자에 대해 취업 허용업종(허용업종 열거 → 제한업종 외 허용)이 확대되고(2023.1.1.),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외국인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이 확대된다(2023.1.1.).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에 불응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2.12.10.).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농어업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2022.12.1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사용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을 받는다(2022.12.11.).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상세 내용

1.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 고시 (2023. 1.1. ~ 12. 31.)

2022년 : 시급 9,160원 → 2023년 : 시급 9,62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휴휴 8시간) 기준의 월 환산액 2,010,5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포함 비율 변경
 [기준]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초과분

[변경]

-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209시간 기준 100,529원) 초과분
- 현금성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209시간 기준 20,105원) 초과분

[참고] 연도별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당해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구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2021년	15%	3%
2022년	10%	2%
2023년	5%	1%
2024년	0%	0%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국회 논의 중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부칙(법률 제15513호) 제2조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1주 12시간에 더하여 최대 1주 8시간 근로시간 연장 (2022. 12. 31. 만료)

[변경]

-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

2.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변경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5 (2023. 1. 1. 시행)

[기준]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참고] 제2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기준)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변경]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

[참고] 제2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개정)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91조의1 2~14, 시행령 제34조의2 (2023. 1. 12. 시행)

[신설]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약물, 화학물질, 고온·전리방사선 등 유해인자 목록 시행령 별표1 규정
- 건강손상자녀 지급 산재보험급여 종류는 요양·장해·간병급여 및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한정
 - 건강손상자녀의 장애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실시하고 법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다만 ① 시행일 전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② 시행일 전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애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③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 (부칙 제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공, 일부 비공개 승인 등 대상 확대

산안법 제110조~제112조 (2023. 1. 16. 시행)

- [기존] 양도·제공자 중 대상화학물질 제조·수입자로 한정)는 MSDS 및 화학물질의 명칭 등 자료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 등 (2022. 1. 16. 시행)
- 제조·수입한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

[변경]

- MSDS 작성·제출, 제공, 일부 비공개 승인 등의 대상 확대
 - 제조·수입한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산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나목에 따라 시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강화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별표3 (2023. 2. 19. 시행)

- [기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의복 사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등*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 * 별표3 제3호(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제21호(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23호(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제24호(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제27호(운수 및 창고업)

[변경]

-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상 강화(의복 사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
- ※ 산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73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21 (2023. 7. 1. 시행)

[신설]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직종(16개) 및 고용보험만 적용받는 직종(3개) 추가한 19개 직종 적용 예정
 -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 추가 직종 : ① 택배 간선기사, ② 화물차주, ③ 유통배송기사
 - 노무제공자 실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 징수 및 급여지급,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50%부담
- ※ 휴업급여, 보험급여 산정기준,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칙(법률 제18928호) 규정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2~4 (2023. 7. 1. 시행)

[신설]

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조의2)

-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부착
-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

좌석안전띠의 착용(제221조의3)

-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토록 해야 함
-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잠금장치의 체결(제221조의4)

-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2023. 8. 18. 시행)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온도, 조명 등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 (2022. 8. 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변경]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일부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 ※ 산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73호) 부칙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행

3.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분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관련 규정 개정	근로자참여법 (이하 근참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2022. 12. 11. 시행)
[기존]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이 시행령(舊령 제3조)에 규정,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규정	
[변경] 협의회의 구성(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시행령 내용 법률로 상향 (구령 제3조 → 개정 법률 제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되는 자로 함 -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舊 시행령 제3조) -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종사근로자)여야 함 - 근로자위원 입후보시 추천 요건 삭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p>※ 본 규정은 이 법(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률 및 시행령 각 부칙 제2조)</p>	

4.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 1. 1. 시행)					
[기존] : 직장가입자 : 6.99%,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						
[변경]						
● 직장가입자 : 7.09%,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3. 1. 1. 시행)					
[기존] 건강보험료액의 12.27%						
[변경]						
● 건강보험료액의 12.81%						
[참고]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및 전년 대비 인상을 추이 (단위 : %)						
① 건강보험 (요율 : 보수월액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요율	6.24	6.46	6.67	6.86	6.99	7.09
인상률	1.96	3.53	3.25	2.85	1.89	1.49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액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요율	7.38	8.51	10.25	11.52	12.27	12.81
인상률	12.67	15.31	20.45	12.39	6.51	4.40

동포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023. 1. 1. 시행)

[기존] 방문취업 비자(H-2) 체류자의 취업 허용업종은 300인 이하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으로 제한

[변경]

- 방문취업 비자(H-2) 체류자의 취업 허용업종을 숙박업, 출판업을 비롯한 인력부족 업종에 대하여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별표1의2를 개정
- ※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개정안임.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2023. 1. 1. 적용)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변경]

-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 ※ 고용보험법 (법률 제1626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6호 (2023. 2. 3. 시행)

[신설]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도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제재 신설

영유아보육법 제56조 (2022. 12. 10. 시행)

[신설]

- 실태조사 불응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사용자 고용허가 제한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2 (2022. 12. 11. 시행)

[신설]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